

문 1.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대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대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대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문 2.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을 약속**한다. /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 $a \times$ 성과’($0 \leq a \leq 1$)라고 할 때, a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a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기도 한다. /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근로자의 성과는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 둘째,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 지표 등을 찾는 것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동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②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 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문 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자율은 채권 가격과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밀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일국 경제의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면 중앙 은행은 채권 매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② 통화 정책의 외부 시차가 없다면 통화 정책을 후행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정책 효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 ③ 준칙주의는 중앙은행이 정책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④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본다.
- ⑤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문 4.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인비는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아닌 **문명**으로 설정하고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 /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및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하게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미약할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과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인 인물들이 역량**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들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에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해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보 기>

빙하기가 끝나고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의 경우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첫째 집단은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고 말았다.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 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했던 역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다.
- ② 첫째 집단에서는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③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아야겠군.
- ④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⑤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겠군.

문 5.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연금 제도의 목적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 반면 **무상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①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 ②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찬성한다.
- ③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 ④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금 기금을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에 찬성한다.
- ⑤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문 6.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면 기업의 조직 구조 역시 따라 바뀔 것으로 본다.
-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문 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판**’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 다만 확정 판결 이후에 **조건 실현과 같은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면 **두 번의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최종적으로 E가 승소할 것이다.
- ② 첫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 이후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 ③ 두 번의 소송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은 기판력을 전제하고 있다.
- ④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이 사건에 대한 처음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① 개개인의 사고 발생 확률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보험은 지속 불가능하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사고 발생 확률이 0.2로 고정된 위험 공동체에서, 보험금을 두 배 높이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두 배가 된다.
- ④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른 두 위험 공동체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서로 같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고 위험 확률을 보유한 사람이다.

문 9.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그러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행정 규칙으로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문 10.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파슨스와 스텔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 파슨스와 스텔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① 뒤르켐에 따르면 집합 의례는 생계 활동에 본래 내재되어 있는 이해관계 추구를 성스러움과 연결 짓는다.
- ② 뒤르켐에 따르면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 ③ 뒤르켐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 ④ 파슨스와 스텔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긴다.
- ⑤ 파슨스와 스텔서는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문 11.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문학 비평의 방식으로서 구조주의 비평과 탈구조주의 비평이 등장하였다. 이 두 비평 방식은 구조 언어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구조 언어학은 언어란 기호들의 체계이며, 언어는 지각 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기호인 기표(記標)와 독자나 청자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기호의 개념인 기의(記意)가 자의적으로 결합한 것이라 규정한다. 구조 언어학은 언어를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양분한다. 모든 언어에는 개별 낱말들과 그것들의 배열을 지배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랑그라고 하고, 랑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언어, 개별 발화는 파롤이라고 하였다.

언어를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구조 언어학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구조주의 비평은 문학의 구조 역시 언어의 구조를 따르다는 전제 아래,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와 구절, 문장의 연속된 양상을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작품을 감상하기보다 작품의 의미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에 주목하였다. 또한 구조 언어학에서 ㉠ 개개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여 문학에 존재하는 어떠한 일반 법칙, 즉 구조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탈구조주의 비평은 구조주의 비평과 달리, 작품의 구조 파악과 법칙 수립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작품에는 인간과 세계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것이 담겨 있으며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할 때는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작품의 기호에는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정신, 현실 세계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어, 기호가 담고 있는 의미는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탈구조주의 비평에서는 ㉡ 본래 의도가 변형되어 나타나도록 한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① ㉠: 개별의 여러 파롤을 통해 랑그를 찾는 것과 같이,
㉡: 랑그를 수립하는 것보다는 파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 ② ㉠: 개별의 여러 파롤을 통해 랑그를 찾는 것과 같이,
㉡: 구조주의 비평이 랑그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비판하면서 랑그의
- ③ ㉠: 개별의 여러 랑그를 통해 파롤을 찾는 것과 같이,
㉡: 랑그를 수립하는 것보다는 파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 ④ ㉠: 개별의 여러 랑그를 통해 파롤을 찾는 것과 같이,
㉡: 구조주의 비평이 랑그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비판하면서 랑그의
- ⑤ ㉠: 개별의 여러 랑그를 통해 파롤을 찾는 것과 같이,
㉡: 파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보다 랑그의 정확한 의미파악을 강조하면서

문 12.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g 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오염 피해액은 d 만큼 발생한다고 하자. 그러나 정부가 단속을 하는 경우 기업의 규제 위반은 반드시 적발되어 벌금으로 p 를 납부해야 한다. p 는 정부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기업의 행위를 단속할 경우 비용 c 를 지불한다.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때 당국이 단속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오염 피해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래의 표에서 각 칸의 첫째 값은 기업의 이익, 둘째 값은 정부의 이익을 뜻하며, $g, d, p, c > 0$ 이다.

기업 \ 정부	단속함	단속 안 함
위반함	$-p + g, p - d - c$	$g, -d$
위반 안 함	$0, -c$	$0, 0$

기업과 정부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한다.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는 단속을 하고, 정부가 단속을 하면 기업은 위반을 하지 않고, 기업이 위반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고,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반을 하게 되고,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가 다시 단속을 하게 된다.

- ① p 가 g 보다 클 경우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 ② p 가 c 보다 클 경우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 ③ p 가 g 보다 크고, p 가 c 보다 클 경우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은 지속적으로 변환한다.
- ④ d 가 c 보다 클 경우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은 균형점에 도달한다.
- 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단속을 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문 13. 다음 글의 ㉠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느 과학자가 간염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였다. 이 약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60명의 간염 환자 중 4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신약을 투여하고, 나머지 20명에게는 위약(placebo)을 투여하는 임상 실험을 하였다. 과학자가 수행한 ㉠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60명의 간염 환자 중 실험이 끝난 후 호전된 환자는 48명이었고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12명이었다.
- 신약을 투여한 집단 중 호전된 환자는 A명,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B명이었다.
- 위약을 투여한 집단 중 호전된 환자는 C명,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D명이었다.

<보 기>

- ㄱ. D가 클수록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커진다.
- ㄴ. A와 C의 차이가 작을수록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작아진다.
- ㄷ. A:B가 4:1이면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위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과 같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4.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환경부의 인사실무 담당자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 환경 전문가를 위촉하려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외부 전문가는 A, B, C, D, E, F이다. 이 여섯 명의 외부 인사에 대해서 담당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 만약 A가 위촉되면, B와 C도 위촉되어야 한다.
- 만약 A가 위촉되지 않는다면, D가 위촉되어야 한다.
- 만약 B가 위촉되지 않는다면, C나 E가 위촉되어야 한다.
- 만약 C와 E가 위촉되면, D는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
- 만약 D나 E가 위촉되면, F도 위촉되어야 한다.

<보 기>

- ㄱ. B가 위촉되지 않는다면, 3명이 위촉된다.
- ㄴ. B와 D가 위촉되었다면, A는 위촉되지 않는다.
- ㄷ. C와 E가 위촉되었다면, F도 위촉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5.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반행정 직렬 주무관으로 새로 채용된 갑진, 을현, 병천, 정남은 공직박람회에 파견을 나갔다. 이들은 각각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부스에서 근무하였다. 갑진, 을현, 병천, 정남은 다음과 같이 후기를 말하였는데, 이들은 참만을 말했거나 거짓만을 말했다.

갑진: 을현이 행정안전부에서 일했거나 병천이 기획재정부에서 일했어. 내가 있던 부스에는 고등학생들도 종종 와서 공직에 대해 물어봤어.

을현: 을현이 행정안전부에서 일했다면, 갑진은 고용노동부에서 일했을 거야. 갑진의 부스에 가서 질문한 사람 대부분은 대학생이었어.

병천: 을현이 행정안전부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정남이 기획안전부에서 일했을 거야. 정남의 부스에는 항상 여성만이 질문을 하러 왔었어.

정남: 내가 일한 부스에 질문 하러 온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었어. 갑진은 고용노동부에, 병천은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어 일했어.

<보 기>

ㄱ. 병천이 거짓을 말했다면 병천은 기획재정부에서 일했다.

ㄴ. 병천이 참을 말했다면 정남은 기획재정부에서 일했다.

ㄷ. 을현이 기획재정부에서 일했을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참을 깨달은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 배움이 있다고 보아도 될까요?

을: 네. 참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건, 스스로 공부했건 관계없이 배움이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갑: 겨레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각오와 책임의 소중함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선생님께서는 겨레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각오를 한 자가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을: 아니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면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가 아닙니다.
또 .

갑: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지 않은자를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지도자는 배움이 있는 자가 되겠군요.

- ① 참을 깨달은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 ②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는 참을 깨달은 자입니다.
- ③ 배움이 있는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 ④ 참을 깨달은 자는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입니다.
- ⑤ 참을 깨달은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가 아닙니다.

문 17. 다음 글의 갑 ~ 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는 ‘불을 뿜는 용이 내 차고에 살고 있다.’라는 주장을 일상에서 들었을 때 그것을 거짓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차고에 가서 용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용이 투명한 용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처럼 특정 주장을 반증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갑: 반증 불가능한 주장이나 가설은 거짓인 주장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을 뿜는 용이 내 차고에 살고 있다.’나 ‘외계인이 존재한다.’ 등과 같은 진술은 거짓이다.

을: 반증 불가능한 주장이나 가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짓인 주장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반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주장을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하기 위해 먼저 성립해야 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반증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진술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병: 반증 불가능한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참일 가능성이 낮은 진술이다. 반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어떤 진술을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미래의 반증, 혹은 입증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보 기>

ㄱ. 갑과 을은 ‘A가 반증 가능한 진술이라면 A는 거짓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ㄴ. 을과 병은 ‘A가 반증 불가능하다면, A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진술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ㄷ. 거짓인 진술과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진술이 양립불가하다면, 병은 ‘신은 존재한다’가 거짓인지 여부에 대한 갑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8. 다음 논쟁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A: 나이 든 사람들은 보통 노년에 나타나는 자신들의 온갖 불행이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훌륭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경우에는, 노인일지라도 나이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B: 사람들은 어르신께서 노년을 수월하게 지내시는 것은 훌륭한 생활 방식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위안거리가 많다고들 하니까요.
- A: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섬나라인 세리포스 출신의 어떤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당신이 유명한 것은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라고 대꾸했지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훌륭함 없이 유명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가난하다면 수월하게 노년을 보낼 수 없겠지만, 훌륭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수월하게 노년을 보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보 기>

- ㄱ. “내가 세리포스 사람이었더라도 유명해질 수 없었지만, 당신이 아테네 사람이어도 유명해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진술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ㄴ. B의 견해에 따르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노인은 있을 수 없다.
- ㄷ. A와 B는 훌륭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도 노년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를 출원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명시된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허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새로움’이다. 특허법은 ‘새로움’을 ‘공간적’으로 지구 상 어느 나라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특허 출원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 ‘인적’으로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식 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 ‘파리 조약’은 해당 나라에서 특허권 취득 요건을 판단할 때에 ‘우선일’을 요건 판단의 기준일로 하는 소급 혜택을 준다. 이때 ‘우선일’은 파리 조약 당사국 중에서 가장 앞선 특허 출원일을 의미하는데,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에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파리 조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6개월 뒤 파리 조약 가입국인 A국에 특허 출원을 했을 때, A국에서 특허 취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출원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한 외국 특허 출원은 절차가 간단하고, 좀 더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권 취득 비용을 초기에 모두 집행해야 하며, 각국의 언어로 각국 특허청 방식에 따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급 혜택을 누릴 수 없어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파리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조약이 ㉡ 특허 협력 조약(PCT)이다. 이를 통한 방법의 핵심은 동일한 특허 출원을 여러 나라에 할 경우, 지정 관청에 하나의 양식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소급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도 12개월에서 30개월로 늘렸고,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되기 전에 PCT 국제 출원을 하고, 이때 전 세계의 PCT 가맹 국가 중에서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한 다음,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되기 전에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를 받고, 그 이후 각 나라의 특허청에 다시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는다. PCT 국제 출원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나 처음부터 각 나라의 특허권 취득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 취득을 진행할 경우가 예상될 경우 유리한 방법이다. 이미 2년 6개월이 지나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특허 출원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 파트너 기업과의 계약 때문에 특허 출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을 알리기 위해 특허 출원 번호만 필요한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은 가능하다.

문 19. 위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각 나라의 별도 절차 없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과 ㉡은 모두 특허권 취득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우선일로 소급해 준다.
- ③ ㉠과 ㉡은 모두 특허권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초기에 모두 집행해야 한다.
- ④ ㉠은 ㉡과 달리 하나의 서류 양식만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취득 절차가 간단하여 특허권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문 20.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례>를 판단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국인 김○○ 씨는 ‘A’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2012년 7월 1일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 후 김○○ 씨는 ‘A’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고, 반응이 좋아서 이듬해 6월 파리 조약 가입국이자 PCT 가맹국인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특허 출원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한 일본인이 김○○ 씨의 ‘A’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2013년 1월 일본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 특허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김○○ 씨는 특허 출원을 포기하였다.

- ① 김○○씨가 2013년 6월에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으로 일본에 특허 출원을 했다면,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겠군.
- ② 2013년 1월에 일본인이 출원한 ‘A’라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 특허권의 시간적, 공간적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겠군.
- ③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김○○씨가 PCT 국제 출원을 활용하여 지정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겠군.
- ④ 김○○씨가 2015년 10월에 일본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PCT 국제 출원의 소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할 수 없겠군.
- ⑤ 김○○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특허 출원을 한 시점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생각이 있었다면 파리 조약보다는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군.